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

2019년 9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역정책과 과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김지호(2072)/ 제공일: 9월 10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 = 발생국 여행자제 및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 =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('18.8.)한 이후 올해에는 몽골·베트남·캄보디아·미얀마·라오스에 이어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.

* (중국) 160건(홍콩 3건 포함), (몽골) 11건, (베트남) 6083건, (캄보디아) 13건, (북한) 1건, (라오스) 94건, (미얀마) 3건, (필리핀) 현재 OIE 공식보고는 없음

** 최근 3년간 52개국 발생 : 유럽 15, 아프리카 29, 아시아 8개국

- 첫째,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 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둘째,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축산물(음식물 포함)을 구입하여 가져 오지 마시고 휴대하여 반입한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(2019.6.1. 시행)
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/2차 750/3차 1000만원, 그 외의 경우 1차 100/2차 300/3차 500만원

-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

** 과태료 부과 현황(6월 1일 이후) : 18건(한국4, 중국인6, 우즈베키스탄3, 캄보디아2, 태국·몽골·필리핀 각 1건)

- 셋째, 축산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넷째,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께서는 부득이 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출입국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귀국 시 검역기관의 소독조치 및 방역교육을 받으시고,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와 여행 시 입었던 의복을 반드시 세탁·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검역대책기간(9.1.~9.30.)을 운영하고 있으며,
 - 전국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.